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3. 12.(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11-045~04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조사 배경과 주요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SKT, KT 및 LGU+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면서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과다지급,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및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인지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3월 7일까지 이통 3사의 본사와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 그다음에 시정조치안 송부 및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아래 ‘중고폰 선보상제’의 세부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사 대상은, 이통 3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중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는 가입자 전체(559,576명)를 대상으로 각 사의 본사 및 유통점을 조사하였습니다. 각 사별 가입자의 숫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위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금 과다지급입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해 모집한 56만여건의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와 KT가 2개의 단말기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약 119,000원 내지 149,000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액과 예상 잔존가치와의 차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기타, 이통 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에게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원금의 세부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통 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해 모집한 전체 가입 건의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 및 KT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LGU+는 ‘LTE62 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액을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 중 무작위 전화 설문을 통하여 응답한 각 사의 45명씩을 분석한 결과, 일부 가입자에게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위약금의 부과기준 및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먼저 이통 3사가 공시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통 3사가 중고폰 선보상 가입조건으로 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지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통 3사가 위약금 부과기준 및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나목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상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시정조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견진술인들이 와 계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위법성 판단까지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에 시정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위반사항과 그 위반사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원금 과다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중고폰 선보상액과 예상 잔존가치와의 차액 내역'이라고 해서 회사별, 기종별로, 대표적으로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A와 비교 되어 있고, 그 <표> 밑에 참고표시로 아이폰6와 6+의 경우에 차액이 크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폰6와 6+에 대해서 선보상제를 적용한 사업자 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선보상액과 예상 잔존가치의 차액이 적거나 없다고 보면 일단 첫째, 지원금 과다지급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서 지원금은 단말기 구입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지금 '지원금 과다지급' 부분에 중고폰 선보상액과 예상 잔존가치와의 차액 부분과 추가적으로 여신이자, 보험료, 풋옵션 이런 혜택을 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파트, 잔존가치와의 차액 부분이 없다면 기타 추가적으로 이런 여신이자, 보험료, 풋옵션, 기타 다른 거래비용 등 이익을 준 것만 놓고 보면 결국 과다 지급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적어집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경우에도 가별성이 있다고 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초과된 정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공시한 금액보다는 어떠한 이유든 수만원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더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규정에 나오는데 제가 가볍게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선보상액과 잔존가치와의 차액을 일단 지원금으로 보는 부분이 13~14만원 이렇게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 플러스 2만원, 3만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15만원, 17만원이 과다지급됐다, 그것은 분명히 과다지급됐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기종인 경우에 앞부분이 없고 기타 경제적 이익만 났을 때 그것이 예를 들면 금액으로 봐서 2~3만원 과다지급된 경우도 여기에서 말하는 과다지급에 해당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 정리하면 지금 이용자정책국장님 말씀은 지원금에는 일체의 경제적인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금 과다지급에는 해당한다, 다만 과다지급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도 당연히 낮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중고폰 선보상제'는 중고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복지를 올릴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따가 이통사 대표들 의견청취도 있는데, 문제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이용자와 '중고폰 선보상제'를 알고 가입한 소수의 이용자 간의 차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입한 56만여명의 이용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거나 62요금제 이상으로 가야 한다거나 누적기본료가 8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용자를 속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이용자 차별 문제가 이 안전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통사 대표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때에도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중고폰은 보상이라고 할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전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안에 예를 들어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재홍 상임위원

- 차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그 중고폰을 활용하도록 복지 혜택을 올려주는 것만큼 가입하지 않은 다수에게 말하자면 정보력이 없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도 중고폰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것이 이용자 차별 시비 논란을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차별 부분은 여기에 논의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마 말씀하시

는 취지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 중고폰을 반납하고 그에 대해 미리 선보상액을 받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중고폰을 처분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이 ‘중고폰 선보상제’에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나중에 18개월이 됐든 24개월이 됐든 중고폰을 각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구입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중고폰 판매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판매할 것인지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또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 드리면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이용자들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이고 중고폰을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인데 잘못하면 그것을 왜 정부가 제재하고 규제 하는가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용자 차별이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보면 역시 또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는, 이용자들로부터 결국은 다 그 이득을 뺏어가면서 일종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높은 전략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다수의 이용자들의 복지와 혜택을 정부가 규제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들의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안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절대 다수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정보력이 없는 분들의 중고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을 개선해 주면 이용자 차별의 시비가 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는 직결되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 다수의 이용자는 “중고폰 보상제가 좋은 건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입해서 그 마케팅 전략을 사주는 이용자 수는 56만 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5,700만의 가입자 중에서 이것을 알고 가입한 56만명에 대한 미고지 또 고가요금제 유도 또 80만원 이상의 누적요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안전에 의미가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지금 안전으로 보고된 위반사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고폰 선보상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의 선보상액이나 또는 그런 ‘중고폰 선보상제’를 설명하는 과정 또 요금제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시정조치안에서 특히 과징금 징수규정을 보면 최소금액으로, 1%로 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징금 부분은 설명을 듣고...

○ 고삼석 상임위원

-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례를 보면, 최소로 한 것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게 된 조사배경을 보면 저희가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인지해서 사실조사를 착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선·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여쭙 보는 것입니다. '중고폰 선보상제'의 경우에는 기존 심결했던 다른 사안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났다가, 과당 경쟁이 이루어졌다거나,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차별 등 권익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 정도 논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위법행위를 인지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착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의견 올리신 것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어떤지, 이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말기유통법의 입법취지를 3가지로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그다음에 이통사의 자율적인 영업활동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존 사례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조사해서 지금까지 이 제재안이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지를 하는 과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 배경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 10월 말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2개월여의 기간을 거치면서 작년 말 그다음에 올 초에 들어오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단말기 그다음에 고가의 특정요금제로 인한 과다보상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차별적인 요인, 일부 계약자에게만 특정요금제를 개별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해서 조사를 하게 되

있던 것입니다. 중대성이 약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특정 단말기에 대한 보상금액의 차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같이 비교해 본 결과, 일부 단말기는 어느 정도 큰 금액이지만 또 일부 단말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의 차별적인 요인 즉 특정요금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지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 자체는 기존에 있는 다른 위법 행위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큰 혜택이 가고 또 중고폰 재활용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이 중대성의 정도를 당초 조사 시작할 때와는 달리 매우 약한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장에 미친 부작용이나 이용자의 권익 침해 이것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언론 등에서의 지적 또는 논의가 있었던 내용을 쪽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명확히 할 부분이, 18개월 이후에 중고폰을 반환할 때 잘못하다가는 위약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즉 처음 계약 체결할 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숙지하지 못한 이용자와 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이용자 차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단말기유통법의 위반 여부를 따질 경우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전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요금제 등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단말기유통법 적용도 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중 이용자차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말기유통법이 일종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어느 특정 행위가 일어났을 때 두 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요금제와 연계해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특정사업자가 했을 때 단말기유통법에 위반되기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럴 경우에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고 최근에 제정되어서, 입법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를 들면 단말기유통법에 저촉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위법·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행위를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단말기유통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단말기유통법에 빠져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규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경우가 단말기유통법에 중요사항 고지 미흡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경우이고,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쪽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특별법적인 단말기유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자 이익 차별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사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주)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주) 의견진술인 입장)

○ 최성준 위원장

- SK텔레콤(주)의 임형도 정책협력실장님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해 주십시오.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임형도입니다. 먼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시장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출시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정조치안에서 판단한 법 위반은 물론이고 앞으로 18개월 이후 중고폰 반납 가능 여부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라가게 된 점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회 결정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SK텔레콤(주)의 경우 정부의 사실조사 착수 시점에서 사업자 중 가장 먼저 프로그램을 자진 중단한 점과 앞서 이용자정책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보상 프로그램의 요금제 접근을 해제하여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SK텔레콤(주)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불가피하게 따라갔다, 예전부터 많이 하던 이야기 같은데 그때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사실 당시, 당장의 판매와 경쟁상황만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판매효과가 큰 측면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따라간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시정조치 제재, 이런 것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SK텔레콤에서는 앞으로 방통위에서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예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제공하지 않을 것인지 그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향후에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내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향후 단말기 구입비용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오늘 심결 결과에 따라 판단기준이 마련된다면 그것에 따라 저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SKT에서 선보상제 프로그램을 출시할 때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내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당시에는 프로그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 이기주 상임위원

- 특히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18개월 이후에 단말기 반납 가능 여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 이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SKT는 KT와 함께 '중고폰 선보상제'를 조기에 중단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어떤 점에서 위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된 지원금보다 별도의 다른 이득을 줬다거나 아니면 이용자 차별의 문제 등 이런 것이 중단해야겠다고 판단한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중단해야겠다고 판단한 근거는 앞서 시정조치안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경쟁사들 간의 마케팅에서 특별히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당시 이통사 모두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쟁에 있어서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용자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케팅인데, 이것을 가령 방통위가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하면 이용자들이 오해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당장의 사항보다 18개월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반납 여부 등 관련해서 이용자 불편 내지는 불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사항 더 확인할 것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장님, 이 직책 맡으시고 심결에 처음 나오시지요?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임자들께서 그 자리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사업자가 행위를 해서 불가피하게 따라갔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SKT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로서 타 사업자를 추종하는 그러한 경영전략은 구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전임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제가 예전의 심결과 관련된 내용은 다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SKT의 의견서 3페이지에 건의사항을 보면 “SK텔레콤의 동(同)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의 동 프로그램 출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제재의 경감 및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전임자들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1위 사업자가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소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의 행위를 쫓아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저희에게 내는 의견서나 소명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식의 소명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선에서 그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제가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식의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과정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SKT의 경우에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A에 대해서 중고폰 선보상을 실시하면서 선보상액을 35만원, 34만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랬지요?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가치 추정법에 의해 18개월 이후 예상 잔존가치를 계산한 것은 그것과 12만원~1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 선보상액을 결정할 때 이런 예상 잔존가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주) 정책협력실장

- 그 당시에 예상 잔존가치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내부에서 확인한 후 다시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더 없으시면 SKT 의견진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K텔레콤(주)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다음은 KT 관계자께서 의견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티 의견진술인 입장)

○ 최성준 위원장

- 김만식 상무님과 박현진 상무님 나오셨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진술해 주십시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금번 건에 대해 소명진술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KT CR의 김만식 상무입니다.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당사의 중고폰 후보상제인 스펀지플랜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KT는 이용자들이 휴대폰 교체시 불편함과 제약사항을 없애기 위해 중고폰 후보상제인 스펀지플랜을 지난 4월 말에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약정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는 등 큰 혜택을 얻게 되어 경쟁사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저희 KT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사에서는 이를 변형한 '중고폰 선보상제'를 출시하였으나 KT에서 검토한 결과, 이는 이용자 관점에서 기획한 중고폰 후보상제와는 달리 오히려 우회적 지원금 지급 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 미흡 등으로 인해 이용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경쟁사에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 운영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장에 발표한 이후 제도의 위법성을 정부에 설명 드리고 중단조치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선보상제 시행을 강행함에 따라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유사한 '중고폰 선보상제'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출시한 이후에도 3사 동시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위원회 사실조사 착수 후에는 자발적으로 제도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제도를 중단하기 전에 저희는 이용자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보상제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 개별 고지를 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자가 18개월 후 누적기본료 80만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중고폰 반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사한 제도가 다시 시행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의 부과를 요청 드리며 사업자별 위법행위의 동기와 위법성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징금 차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T는 향후에도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먼저 하나 확인을 해 볼 것이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시고 '추후 이러한 보완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상 잔존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다 지원금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중고폰 잔존가치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중고폰의 상태나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아까 SKT에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KT가 특히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A 선보 상액을 38만원과 34만원 지급했습니다. 공제해 준 셈이지요. 그렇지요? 선보상액을 그렇게 책정했지요?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와 같은 선보상액을 38만원과 34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이 두 기종이 18개월 이후에 중고가가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했을 텐데, 그와 같은 근거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사실 미래가치에 대한 예상은 18개월 전에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사업자들이나 중고폰 유통업체들에게 각 모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냐는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치를 산정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반적인 경제학이나 회계학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잔존가치를 특정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시장가치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로 중고폰 거래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38만원, 34만원이 나오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딱 정확하게 가치를 산정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경쟁상황에 따라 예측해서 하고,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묻고 판단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글로벌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예, 저희가 글로벌 사업자로부터 한 번 의견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그 받은 자료에 갤럭시 노트4가 딱 38만원이 아니더라도 38만원 안팎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그렇게 특정 모델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삼성 모델인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삼아서 가치를 산정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갤럭시 시리즈가 몇 종이나 됩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갤럭시 S가 5까지 나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갤럭시 시리즈가 꽤 많지요? 그런데 갤럭시 노트4, 그다음에 갤럭시 S5, 이렇게 기종이 구분이 안 되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 잔존가치를 대강 얼마라고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갤럭시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갤럭시 S3, 갤럭시 S2 그런 모델들이 한 12개월 또는 1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시장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고폰을 거래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저희가 내용을 받았고 그것을 참고삼아서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선보상액을 결정한 것입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그 내용 그리고 경쟁상황에 따라 아이폰에 대해 가치를 산정한 금액 그리고 최초 단말기가 출고될 때의 출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갤럭시 노트4가 나중에 아이폰6나 6플러스보다 18개월 이후에 중고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큰 갭(gap)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KT는 아이폰6와 6플러스에 대해서는 선보상액을 얼마 지급했지요?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아이폰6 16G는 33만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상위 기종에 대해서는 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아이폰6에 비해 갤럭시 노트4는 38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선보상액이 더 많은 것을 보면 18개월 이후에 중고가도 더 높은 금액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저희가 갤럭시S 다른 부분들은 34만원으로 해서 유사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KT는 선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금 과다지급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같은 유사한 모델에 대해서는 출고가에서 18개월 이후에 잔존가치가 비슷할 것이라고, 저희 뿐만 아니라 다들 사업자들도 추정해서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사업자의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KT의 경우에는 선보상액이 잔존가치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여쭙 봤는데 계속 그 주장을 유지하시니까 여쭙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법 5조에 지원금과 연계해서 개별계약은 체결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번에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아까 SKT의 경우에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하는 부분에 관해 해제하겠다는 것을 의견서에 명확하게 밝혔는데, 물론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말씀하실 때 구두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그 부분을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심결 있기 전 방통위 사무국에도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그렇게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풀겠다, 안 풀겠다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1항을 위반하면 자연히 그 개별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만원 기본료 이상을 누적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항 자체는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KT에 중고폰 후보상제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업무과약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케팅은 하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아까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이용자들에게도 중고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고폰 선보상제'가 문제가 없으려면 중고폰 후보상제에서 받는 중고폰 잔존가치 그 가격에서, 예를 들면 새기기를 구입하면서 중고폰을 30만원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18개월 전에 미리 선보상할 때에는 그 30만원에 대한 18개월의 은행이자를 빼고 선보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중간이자의 문제입니다. 그것 말고 또 보험료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한 환산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KT처럼 다른 이통사에도 후보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예,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3사 다 있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3사가 다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당연히 선보상제를 실시할 때에는 나중에 후보상제 할 때 그 가격의 기준에서 금리를 빼고 말하자면 공시된 지원금 이상 별도의 이득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위원님, 선보상제에는 보상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추후에 단말의 상태나 반납조건에 따라서 잘못 반납하거나 반납을 안 할 경우에 선보상 받은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따가 시정조치를 논의하겠지만 '중고폰 선보상제'에서 위법사항을 뺀다면 다시 마케팅 전략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채택하기는 어렵겠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이 프로모션은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혹시 그러면 이것을 주도한 사업자가 LGU+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케팅 전략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법사항이 많기 때문입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오늘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향후에 분쟁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런 위법소지를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현재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박현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외국산 스마트폰에 비해 국산 스마트폰의 중고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유지되지 않는다, 아이폰은 중고가격 형성이 잘 유지되는데 국산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과 갤럭시의 선보상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한 것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근거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LGU+가 아이폰을 두고 '중고폰 선보상제' 마케팅을 썼기 때문에 SKT와 KT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 가입자들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소를 뺀 뒤에 계속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LGU+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것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찬동할 수 없는데 거기에 여러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이용자 차별의 문제나 고가요금제 유도의 문제나 누적요금 80만원 이상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시장 경쟁이나 마케팅 전략에서 불리해서 관둬다거나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정조치는 이따 논의하겠지만 중고폰 후보상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저희는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통 3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SKT의 '클럽T'가 12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4월에 출시했던 '스핀지플랜'이 90만 정도 되고 LGU+의 후보상제가 2만이 채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중고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보상제의 독소를 빼고 나면 이용자들의 오해나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정조치를 보시고 그렇게 2가지 제도를 병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중고폰 후보상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저희는 2014년 4월부터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사무처에서 이번 에 조사한 결과, 어떤 부분들이 위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후보상제가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적인 말씀을 올리기는 그러한데 저희 쪽 자체 외부 로펌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온 상품이었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 보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심결이 끝난 이후에 후보상제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면,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바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방통위에서 후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이나 조사를 하기 전에 오늘 만약에 시정조치가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라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후보상제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시정하고 보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의견진술을 듣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견진술이 끝난 이후에 계속 논의를 진행해서 오늘 최종적인 시정명령 등의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KT 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참고했던 자료를, 저희 사무국에서 팩스를 알려 드릴 테니까, 바로 팩스로 자료를 받아서 LGU+가 의견진술하는 사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가서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고 의견을 바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직 SKT 의견진술인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대기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SKT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자료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잔존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바로 팩스를 통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SKT 측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SKT를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케이티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다음은 (주)LGU+의 의견진술을 듣겠습니다.

(주)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입장)

○ 최성준 위원장

- 강학주 상무님과 최순종 상무님 나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 의견진술해 주십시오.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감사합니다. LGU+의 CR에 근무하고 있는 강학주 상무입니다.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는 중고폰 반납금액을 선할인하여 고객의 단말구매비용을 절감하

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법 위반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점을 이번 심결 시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회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고지와 관련하여 이미 제출 드린 의견과 같이 4단계에 걸쳐 계약시점 시 상세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 시 단말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사 대비 충실한 수준이며,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사용기간 경과 및 반납시점 도래 시 추가안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발생은 폐사의 영업활동 및 기업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바 필요한 안내상황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 및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시정조치안에서 지적한 경제적 이익기준을 당사가 검토한 결과, 회사가 선정한 금액은 약 26,000원 수준입니다. 현재 아이폰의 중고폰 시세는 폐사의 선보상 상품설계 시 당초 예상보다 87,000원이 높습니다. 18개월 뒤 중고폰 시세는 상기 26,000원을 포함하더라도 선보상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현재 이용자 부담 경감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말기유통법 이후 통신3사가 제공 중인 스펀지플랜과 같이 단말기 위약금 면제 상품 또는 신규 단말기 출시 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다수의 행사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별 계약 강요와 관련하여 저희 선보상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고 위약금이 아닌 응당 선보상금액의 반환만을 이용자에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 등의 페널티는 없어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상당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한 타사의 중고폰 후보상제를 참고하여 위법성을 최소화하고 요금제 조건 또한 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사의 질문 과정에 나왔던 것 중에서 설명을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56만명의 가입자, 저희 회사는 20만명이 조금 넘고 있는데,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가입자에 대해서만 페이버(favor)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중고폰 선보상제' 시행할 경우에 위법성 판단을 안 해 봤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위법성 판단기준이 이슈화됐던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출시 직전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8개월 뒤에 중고폰 선보상가격, 중고폰 가격과 처음에 선보상한 가격이 굉장히 다르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외부 또는 내부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앞에 아이폰3, 4, 5의 가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보수적으로 한다면 위법성 소지는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62요금제 이상으로 가는 것이 고가요금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단말기유통법 이후에 타사가 제공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봤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KT의 '스펀지플랜', SKT의 '클럽T'라는 상품들이 KT는 80만원이라는 요금조건, 그리고 SKT는 실요금제가 62,000원 이상의 요금제 조건들을 강요하는 것들이 거의 7개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거의 12개월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의 요금제한 조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면 위법성 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위법성에 대한 것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

도 상당한 기간 동안 큰 문제없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 저희가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선보상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보상금액을 미리 특정 지었다는 것입니다. 후보상은 12개월 또는 18개월 뒤에 후보상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잔존 할부금 면제'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한 프로그램의 보상금액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서 최소한으로 위법성을 줄이고자 했던 노력에 비해서 타사의 후보상 제도의 프로그램 자체들은 명확하게 지원금과 전혀 다른 형태의 보상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며, 나중에 이 심결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중고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통 3사가 중고폰 보상과 별도로 중고폰 자체를 이미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단말기 종류나 또는 회사에 상관없이, 요금제에 상관없이 현재로서는 단말기들을 별도로 매입하는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하게 어떤 것은 배제하고, 배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중고폰 활성화 또는 매입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는 단말기유통법 환경 하에서 법 위반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노력하였으며 장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속되어 온 타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시 이후에 선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점과 이용자 고지를 충실히 한 점을 심결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말기유통 환경 하에서 이용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LGU+ 입장에서 보면 선보상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지요?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견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 중고폰 후보상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물귀신 작전이라고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품을 출시할 때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사들이 선보상제도를 출시할 때 참고할만한 어떤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쫓았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저희가 할 때는 타사가 4월부터 시작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8월부터 시작한 것이 있다 보니까 11월까지 한 2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제공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 정도 선에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의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시정조치안이 나오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린 것은 위법성 판단에 대한 부분은 뒤에 심결을 하겠지만 앞에 저희가 참고로 했던 상품들이 별 조치 없이 쫓 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형태의 내부의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중에 후보상제를 출시했습니다. KT가 작년 4월, 그다음에 SKT가 작년 8월 그리고 LGU+가 작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하신 것 아닙니까? 위법성 여지를 인식하면서 후보상제를 출시하신 것입니까?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위법성 여지는 있지만 조치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도 될 수 있다는 판단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보상과 후보상을 동시에 갈 수 없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 가입자가 19,000명 정도, 2만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상제는 제가 이용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대로 한다면 12개월 또는 18개월 시점에 휴대폰을 반납하면 반납시점에 잔여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GU+에서 운영하는 후보상제는 반납하는 특정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12개월이나 18개월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계약시점에 예를 들어 지원금 형태로 설명이 된다면 현재 선보상제와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그 설명 자체가 처음에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후보상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금액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서 무조건 할부 잔액 면제라는 것은 공시지원금 자체의 위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동안 쫓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에 이야기했고, 사업자들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문제제기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계속 없다 보니

“문제가 없나?” 저희 내부에서 조금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상대방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출시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보통 출시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에 먼저 진출한 2개사와 지금 LGU+의 입장을 보면 선보상제에 대해서는 앞의 2개사들은 위법행위 논란으로 인해 중지하겠다고 한 것이고, 또 타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LGU+에서는 후보상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보상제나 후보상제나 이용자의 편익,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 자체가 도입 당시에는 나름의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은데, 이용자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선보상제나 후보상제나 모두 현재 위법성이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운영된다면 그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선보상 프로그램을 2월 말로 잠시 중단했습니다. 속어를 쓰겠습니다만 소위 상품의 ‘약발’이라는 것이 무제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출시하면 보통 2, 3개월 정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보상 프로그램인 ‘제로클럽’에 대한 상품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정도 왔으면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중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심결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되기는 하겠지만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때에는 그런 불법 소지가 지적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출시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중고폰 후보상제의 조건이 있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조건이 있습니다. KT는 80만원 이상 조건이 들어가 있고, SKT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요금제로 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들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보상제….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후보상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보상제도 선보상제와 비슷한 그런 조건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그렇지만 선보상제는 단말기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후보상제는 단말기 제한 없이 모든 단말기에 다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보상제도 문제점이 없는지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중고폰 선보상 가격과 후보상 가격을 알고 싶은데 아이폰의 경우 선보상 가격과 18개월 후 후보상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현재 아이폰6는 18개월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앞에 출시된 아이폰3, 4, 5, 5S를 보면 최초 출시일로부터 18개월 뒤에는 출고가의 42%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 정도를 하면 저희가 설정한 34만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봐서 했던 것입니다. 18개월 정도 되면 가격이 출고가의 4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중고가격이 18개월 후에?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중고폰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중고폰 사이트에 있는 가격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세 형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최순중 ㈜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 추가로 말씀 드리면 아이폰은 벌써 5년 동안 글로벌에서 중고폰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미 온라인사이트에서도 그러한 시세는 점검해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보상제도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비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중고폰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꽤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62고가요금제나 80만원 이상 누적기본료 등 이런 것들이 6만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혜택의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 중고폰 활용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용자 혜택, 복지와 이통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어느 정도 상생구조가 되어야 하는 게 좋은데, 마케팅인데, 그냥 이용자 복지만을 위해 할 수야 있겠습니까? 아주 동떨어지게 마케팅 전략으로만 이용한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이용자와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간에 지원금에서 차별이 생긴다, 그런 문제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LGU+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지요? 선보상제를 처음에 시작했고, 시정 조치에서 독소를, 위법사항을 빼면 다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기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된지 지금 5개월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약발'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저희가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케팅의 생명,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부 현실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끝으로, 이통3사가 다하고 있는 중고폰 후보상제는 가입해 놓은 이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입을 안 하면...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가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나중에 새로운 기계를 받고 싶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고폰을 내놓고 어떻게 보상에 달라...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중고폰은 보상에 주지만 잔여 할부금 면제를 해 주는 혜택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해 주고, 그것을 사 줍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사주기는 합니다.

○ 최순중 ㈜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 사주기는 하지만 선보상제든 후보상제든 가입할 때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결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의 경우 기기를 바꿀 때 보상제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중고폰의 보상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약간 수리해서 다시 중고시장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평상시에도 쭉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보상제든 선보상제든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런 중고폰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쓰면 좋겠습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이용자 차별, 시비 논란이 적어질 것입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62요금제'라는 고가요금제에 대해서 이용자가 예를 들어 '62요금제'에서 '52요금제'나 '42요금제'로 내려갔을 때 저희가 주는 페널티는 원래 이용자가 내야 할 할부원금, 일반적인 금액들은 선보상금액을 포함시킨 전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인데 선보상을 30만원 해 주면, 일반이용자들은 60만원에서 할부금을 쭉 내야 하는 것이고, 선보상 받은 사람들은 30만원에 대한 할부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요금제 가입자가 52요금제로 떨어지면 30만원 내던 것을 원래 이용자가 낼 60만원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페널티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설사 이것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약금으로 부여한 특정한, 부당한 형태의 페널티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만원을 내고 있다가 2만원을 내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용자가 이미 2만원을 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부당한 페널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까 시정조치에서 고가요금제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저희가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SKT는 누적기본료가 8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고, LGU+는 62요금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6만원 이하, 45,000원, 4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분들이 중간에 나도 선보상제를 해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62요금제에 맞춰서 더 많이 내야 합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중간에는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처음 구매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아예 62요금제 미만의 요금제에 들어간 가입자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다수의 어려운 이용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선보상제에 가입했다가 그 조건을 LTE 62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원래대로 할부금을 내면 되니까 그것은 부당한 위약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반드시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만 제5조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면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위약금이 적정한 위약금인지, 부당한 과도한 위약금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할 경우에 그런 것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 최성준 위원장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원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지,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위약금 등'이라고 했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이 이용자에게 뭔가 불리하게, 자기가 내야 할 금액 말고 부당한 금액적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62요금제를 10개월 쓰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 아래 요금제를 쓰면 원래 금액으로 해서 할부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위약금이 아닙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저희가 이해하는 위약금은 뭐냐 하면 처음에 가입할 때 저희가 공시된 지원금을 드리는데, 공시된 지원금은 사업자 돈으로 지불하고 그것이 계약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수하는 제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돈 자체를 저희가 선보상이라는 파이낸싱(financing)을 통해 미리 해 준 것입니다. 원래 이용자의 채무로 잡혀야 할 금액이 잠시 유예되어 있는 것인데 유예라는 계약이 깨지면서 부담하는 것이 위약금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요금제를 바꿨다는 것 이외에는 상황이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단말기를 18개월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요금제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할부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약금이 아닙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어차피 그 할부금 자체는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처음 약정할 때 적은 할부금을 내기로 약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금제를 바꿨다고 해서 많은 할부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많은 할부금이 조금 오버된...

○ 최성준 위원장

- 부당하거나 그 위약금의 정도가 과도한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요금제를 바꿨다

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약금이 아닙니까?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할 때 위약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저희는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하나만 더 여쭙 보면 아까 단말기 아이폰6나 6플러스의 중고가가 선보상액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보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42%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는데, 현재 아이폰의 출고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아이폰 가격 자체가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42%가 나왔는데, 그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 가격에서 지금은 얼마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상했던 가격과 지금 중고폰 시세 사이트 것과 비교해 보니까 8만원 정도가 현재 예상한 그래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거꾸로 여쭙 보고 싶은데 '중고폰 선보상제'를 제대로 하려면 선보상액 제값을 다 주어야지, 왜 그렇게 더 높은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더 낮게 주신 것입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시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최순종 ㈜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참고로 한 것은 S3와 아이폰3, 4, 5에 대한 금액들이 대부분이 시기에 34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한 것이고 또 그 부분이 사실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6는 가치가 더 높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그것이 대화면이나 기존에 있던 아이폰의 콘셉트를 벗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이폰6나 아이폰6플러스의 출고가가 원래 얼마였지요?

○ 최순종 ㈜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 79만 9,000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80만원으로 치면 42% 하면 거의 엇비슷한 가격 아닙니까?

○ 최순종 ㈜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 저희가 책정한 34만원 수준의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아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이 더 크고 아이폰6에 대한 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했을 때, 출고가에서 쪽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저희가 지금 출고한지 5개월 됐으니까 그래프상으로 예측하면 예를 들어 60만원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저희가 조사해 보니 8만원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

○ 최성준 위원장

-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42% 자료에 의해서 80만원 출고가에서 계산한 것과 비슷한 가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LGU+ 측에서는 제5조의 이용약관과 다른 별도의 개별 계약 체결 그리고 그에 대한 위약금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제4조, 제5조 위반에 대해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드린 것처럼 원래 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페널티를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타사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 출시할 때 참조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출시돼서 오랫동안 문제가 없다 보니 그렇게 저희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둘 다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순중 (주)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 천연해 드리면 그러한 소비자 선택의 경우에도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겐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가입기간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 이익이 훨씬 더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만약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SKT와 KT의 입장과 LGU+ 측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강학주 (주)LG유플러스 CR전략실 공정경쟁담당 상무**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것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KT 의견진술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다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는데 KT 의견진술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주)케이티 의견진술인 입장)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관해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요?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위원장님, 아까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스펀지플랜’ 후보상제를 출시하면서 아이폰에 대해 검토한 내역은 지금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희 마케팅 담당 상무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깜짝 놀라서... 단지 삼성이나 LG 등 국내 고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약간 수만 원의 차이는 있지만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일단 팩스로 아이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아이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것에 의하더라도 중고가가 선보상액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4나 S5-A에 대해서는 저희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15만원, 13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차이가 거의 없고 같다는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 박현진 (주)케이티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상무

-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죄송합니다. 심결장에 처음 나와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주)케이티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시정조치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정책국에서 보기에 지금 LGU+에서 주장한 것인데 선보상제가 만약에 위법하다면 중고폰 후보상제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이 현재 <붙임 2>의 2쪽에 있습니다. LGU+에서는 서면으로, 그 부분도 후보상제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붙임 2>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위원장님, 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만 말씀 드리면, 지금 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후보상제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상제는 일단 일정한 기간, 12개월이나 18개월 후에 단말기를 반납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선보상제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다만,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사는 단말기의 경우, SKT는 100만원 이하 모든 단말기에 적용하고 있고, KT는 LTE 모든 단말기, LGU+는 아이폰6와 6플러스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의 경우, SKT는 무한요금 75,000원 이상 해당되고, KT와 LGU+는 전체 요금제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 부분인데 KT와 LGU+는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SKT는 요금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가입자가 변경을 하더라도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보상제와 후보상제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점만 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후보상제는 12개월 또는 18개월 시점에 일정한 요금제 또는 누적기본료에 미달하더라도 그냥 잔여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위약금을 내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선보상제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12개월 또는 18개월 시점에 잔여할부금을 면제받았을 때 과연 그 잔여할부금이 그 당시의 중고시세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기는 하네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반납 시점이 되는 12개월 또는 18개월 후에 중고시세의 가격에 따라 실제로 면제되는 금액보다 중고시세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금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이것은 아까 진술한 바와 같이 작년 4월~10월까지, 즉 우리가 말하는 단말기유통법이 지정되기 이전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단말기유통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됐던 측면도 특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문제 관련해서 3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쫓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논리로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런 형태로 마케팅을 했는데 방통위가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따라했다, 그것이 LTE 62요금제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보상제에 대해 이용자정책국에서 오랜 동안 조사도 했고, 검토도 했고, 위원님들과도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물론 100%는 아니지

만 이 3가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상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보상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상태에서, 후보상제가 어떤지 신중히 검토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면 후보상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것이 꼭 조사형태가 아니더라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 보완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또 통신사들은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시하는데 방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조사다, 제재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이 단말기유통법상 위법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유권해석 형태가 됐든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앞으로 업무 수행시 염두에 두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면 아까 LGU+의 주장을 들었겠지만 단말기유통법 제5조에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라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부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여하는 등”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의견진술인의 주장은 당시 원래대로 할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위약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위약금으로 봐야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위약금이라고 봅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위원장님, LGU+가 주장한 대로 선보상 받은 금액 자체를 다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지만 실제 가입신청서상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LGU+의 내부 교육자료에도 위약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계약서에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위약금 부과항목에 선보상금액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법성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은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위약금 문제에 대해 저도 나름대로 의견개진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면서 지원금의 범위, 개념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이후 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원금에 대해 실제적 경우를 놓고 저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통신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위약금 제도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위약금 제도 전반에 대해 한 번 검토해서 어떤 것은 위약금의 정의부터, 개념부터 해서 이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적절한 기회에 위약금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시정조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6페이지입니다. 먼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그리고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징금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초과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약하여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모두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통3사 모두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시정조치를 1회 받았으므로 필수적 가중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 그다음에 기존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SKT와 KT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하며 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이통 3사 모두 20%를 감

경하고, 그다음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3사 모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10%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감경의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SK는 50%의 감경, KT는 50%의 감경, LGU+는 30%의 감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통3사에 대해서는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각사별 세부적인 금액과 계산방법 등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관련해서는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사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시정명령하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의견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통 3사 의견서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도 이용자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앞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징금과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안에 기준금액이 있는데 기준금액이 고시에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 그리고 가입자 수,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산정방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아까 지원금 과다지급과 관련해서 똑같이 1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17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일단 그렇게 위반해서 모집한 가입자 수 등을 감안해서 이 기준 금액이 나왔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왔고, 다만 위법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와 제5조를 동시에 위반했기 때문에 제4조에 있어서는 위반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제5조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기는 한데 오늘 이 건의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에 대해서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 저런 변수 그리고 과거부터 과징금 산정할 때 이런 기준, 고려요인, 기준금액, 산출방법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보니까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과다하게 지급했느냐 여부만 보느냐, 아니면 과다한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래서 안건 6쪽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현행 규정상 중대성의 정도, 그 위법성의 정도를 다 고려해서 최저 1%에서 최대 4%까지, 매출액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시에 의해서 계산하되, 부과기준율이라고 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부과기준율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법성이 됐든 여러 가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과기준율이라는 것을 1~4%까지 재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대성은 매우 약하다, 3사의 여러 가지 유불리는 정도의 차이는 각각 있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매우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치인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에 2%든, 3%든 또는 2.5%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별로, 어느 사에 대해서는 2% 적용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를 다할 수 있습니다만 3사 모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할 때...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같다고 본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제재 건과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최소치인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3사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자리에서 듣고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사항 미고지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하기로 되어 있지만, 회사별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반의 정도가 자기 주장이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가중한다, 경감한다 이런 판단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부과기준율이나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중, 감경이 뒤에 이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가중사유도 개별사에 따라서는 일부 있는데 그 부분도 가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경사유로 넘어가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감경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다하더라도 규정상 맥시멈 50%까지 2개사에 대해 최대한 감경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명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소위 공시지원금 초과 수준이 높다, 낮다는 그런 사정과 어디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최초로 출시하고 다른 곳은 저쪽에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쓰니까 불가피하게 따라갔다는 사정, 그에 따라서 '중고폰 선보상제'의 가입률이 LGU+의 경우에 제일 높다,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3사 모두 1%의 부과기준율로, 최하한이지요, 최하한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보시기에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미세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정책국장께서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의 차이를 가중·감경해서 일부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이 건은 사무처에서 준비한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성적인 판단, 아까 가중·감경하는 것은 크게 본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고시를 보니까 고시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적인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뭐가 있을까? 아까 가중·감경 이런 이야기는 질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적인 것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정조치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해 저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하면서 부과되어 있는 조건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18개월 이후에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물론 거기에는 중간이자도 적정하게 공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요금제와 연

계시키지 아니하고 다양한 요금제의 경우에도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18개월 이후에 중고폰을 반납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가입자에게 고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다 같은 의견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11-04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0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난 1월 9일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중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정된 사업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며, 조치수준은 지난번 위원회에 보고한 안과 다른 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안에는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서 명확성의 정책이나 또 과도한 규제, 업계에 대한 지원과 또 자발적인 협조 등의 필요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과 관련된 부분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즉시 삭제, 전송방지 등 조치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아래 쪽에 등록요건을 추가하는 내용과 처분기준을 9개월로 하는 부분들은 이전에 보고 드린 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규정도 보고안과 같아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월에 위원회에 보고 드린 안 중에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계약 체결 과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래 참고사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안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삭제는 이전에 보고 드린 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 등과 관련해서 개정된 사업법이 5,000만원으로 상향한 부분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향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4월 16일 공포·시행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일부개정안과 대비표 그리고 주요 제출 의견 및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11-04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회계정리 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에 2월 보고 드린 후 행정예고를 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규제 없음’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어 고시의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 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고시 발령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은 지난 2월 12일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논의를 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 보고됐을 때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것들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장된 기업과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또 공공기관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의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받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방송사들에 대한 회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그 건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이것은 방송정책국과 협의해서 방송법 개정사항으로 넣어야 할지, 방송사업 회계정리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야 할지 논의할 사항입니다.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방송기반국과 이용자정책국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회계정리기준과 관련된 현행 제도 그리고 회계자료와 관련해서 금지행위 제도에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등등, 통신사업자든 방송사업자든 현행 제도를 꼭 다 리뷰를 해서 회계정리기준과 회계자료를 제출받거나 검증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잘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다른 사례도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에 대한 회계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저는 연구의 범위나 깊이를 고려할 때 작업량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 국·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 전체 차원에서 그것을 과제화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만, 의결은 하시되, 다른 건으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에 “종편 ‘광고계 X파일’ 유출로 드러난 종편광고시장의 뒷거래”라는 제목의 기사로, 모 종편 광고팀이 작성한 업무일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에 종편 미디어랩사들이 본격적으로 방송광고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미디어랩사들의 관리·감독 그리고 방송광고 영업에 있어서 금지행위 이러한 것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저희가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업무일지에는 특정 종편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편사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일지를 보면 종편과 모기업 신문사 기자들을 동원한 광고영업 그리고 특정 제품의 방송 혹은 재방송과 연계시킨 광고영업, 비정부기구 등에 대한 광고비 증액요청 등 매우 구체적인 광고영업 형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건의 작성주체로 지목된 해당 종편의 광고팀장은 언론을 통해 업무일지의 내용이 집행되거나 회사를 통해 움직인 것은 없다고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업무일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취지의 민원서류를 어제 접수했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종편의 광고영업 행태를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송광고 판매대행’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제6호를 보면 광고판매대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징

역형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1차적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방통위의 규제대상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그 진위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실태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도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종편사들을 위해서라도 진위여부를 가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방송기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우선 그 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건은 위원회에 몇 차례 보고된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익히 아는 것 같고 최근에 추가됐거나 보완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 최성준 위원장

- 최근에 미래부와 협의해서 수정된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업무영역 측면에서 또 목적이나 구성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꼭 필요하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은 일단 유료방송...

○ 이기주 상임위원

- 5페이지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5페이지입니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미래부장관이 일단 설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여기에는 방통위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자,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사업자 단체가 추천한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PP 의무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증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방송광고 종류도 이 시행령에 추가하게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인데 방송광고 종류 부분에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광고 기법의 적용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방송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리고 ‘결합판매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방지’ 조항도 우리 쪽에서 요청해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제69조의4를 보시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4페이지지요?

○ 최성준 위원장

- 4페이지 ‘결합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4페이지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제69조의4 조문내용을 보시면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합판매 시책에 경품 또는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는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다 이용자보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통합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나열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중복되게 규정하기보다는 방송법에서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통합이용자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한다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5페이지 기타사항에 있는 '유료방송산업 균형발전', 이를 위해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논의과정에서도 계속 제 입장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지, 또 정책추진이 원만하게 되는지, 또 역으로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유료방송과 관련해서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제35조제5항제3호를 보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죄송합니다. 그것이 중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미래부와 협의해서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죄송합니다. 어제 오전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다시 그 이후에 계속 협상을 했기 때문에 최종 버전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유료방송시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나 미래부의 관련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공정경쟁과 관련된 정책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문제제기에 따라 협상하면서 바꿨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원래 안에서 보면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안이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미래부가 저희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유료방송 전반에 대해 업무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미래부가 저희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와 협의해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 위원회와 상생하고 협력해야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처음에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 PP산업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PP산업 발전종합계획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 나와 있지만 방통위와 협의해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는 결정 기구는 아닙니다. 자문기구 성격인데 심의사항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경쟁 이런 부분들은 빼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후규제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T.O.(table of organization)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사항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미래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래부가 업무를 추진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높아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여전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의 필요성과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고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위원회가 생기면 유료방송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다 담당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지, 현재 미래부나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영향은 크게 못 준다고 생각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은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제69조의3(공정경쟁의 촉진)이 있습니다. 제1항은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간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령을 정할 때 주의 깊게 규정을 만들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체가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정경쟁 관련해서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도 할 수 있지만 규제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 방통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정부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시행령 작업할 때는, 아까 고 위원님이 발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잘 다듬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하여 미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명확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이행하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제69조의3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IPTV법에 있는 사항인데 방송법을 통합하면서 기존의 나머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사업자도 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정경쟁이나 사후규제 쪽은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9조3에 따라서, 안전에 있습니다만, IPTV 사업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료방송사업자도 회계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시행령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IPTV법 시행령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회계분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IPTV법에도 제1항은 ‘정부는’ 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IPTV법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IPTV법에도 여전히 '정부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PTV법에 제2항은 따로 없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2항도 IPTV법 제4항에 있는,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제2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주어는 '정부는'으로 되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정부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69조의4 제1항에 "정부는 ...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2항에 "방송통신위원회는 ... 시책에 ...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제2항에 적절하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점, 또 위원 위촉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것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 전체적인 규정을 보면 심의기구여서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굳이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미래부의 정규 업무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종편과 보도PP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미래부에 둔다? 이것이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기본정책상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발전위원회', '공영방송발전위원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유료방송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보는 것인데, 수신료에 의해서 그것은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의 계약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으로 한다면 정말 무료보편서비스나 공영방송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두어도 상관없을 텐데 방통위에 그런 발전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하느냐? 그것도 이상한 것이지요. 우리 정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옥상옥처럼 별도의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방송 구조의 균형을 깨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광고 종류에 새로운 광고기법을 혼용, 혼합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방송광고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현재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TV화면에 등장하면 이것은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

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데 시행령에 이런 새로운 종류의 광고가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 방송법에 방송광고 종류가 7가지로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되는 새로운 광고기법은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보고 안건 자체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각자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주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KBS가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작성 발표했습니다. 저도 책자를 지난주에 받았고 이번 주에 들어서는 언론의 중요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절차, 과정에서 KBS 내 구성원 중 주요단체인 노조와 기자협회, PD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은 선언적인 규정이고 어떤 것은 행위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KBS 내에 그런 중요한 단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후속 실천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실무자란 평기자, 평PD인데 실무책임자 간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간부는 부장 이상들입니다. 부장 이상

들이 평가자, 평PD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타율적으로 수정,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 2001년도에 방송법에 근거해서 KBS 편성규약이 제정됐고 2003년도에 그것이 수정·발전됐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실무책임자와 실무자의 행위규범이 구분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수정·발전된 KBS 편성규약과 함께 현장의 실무자와 실무책임자가 잘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향후 방송의 공정성이 정말 잘 확립되면 타율적인 방송심의제도를 전환해서 자율심의 제도로 발전시켜 가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단체의 장이 업계 자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의 참모를 했던 분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차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접촉했던 케이블TV 관계자들은 미래부가 전임 대통령 홍보수석을 케이블TV협회 회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부 요구에 대해 당혹스러워했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일은 케이블TV 20주년 기념식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케이블TV 20년 역사에 이런 식으로 사업자들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협회장이 추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홍보수석을 케이블TV협회장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관을 보면 회장은 업계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추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케이블TV업계 자율로 협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장 선출 과정을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둬줄 것을 관계되는 분들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이 자유롭게 많은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발제하시는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케이블TV협회장 건은 제가 말씀을 쪽 들어보니까 고 위원님도 첫 머리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고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이 다음 주에 해외출장이 있어서 다음 회의는 추후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시 7분 폐회 】